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94 발의연월일: 2025. 1. 23.

발 의 자:김위상・박성민・우재준

김선교 • 이인선 • 서일준

임이자 · 김소희 · 이종배

김승수・구자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등 지급에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임직원 도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되나, 지방공사 또는 지방 공단의 임직원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징계를 받더라도 퇴직금 등의 지 급에 제한이 없음.

이에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임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무원의 파면·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에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적 업무수행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범죄 및 비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3 및 제80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80조의3 및 제8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① 공사 또는 공단 임직원의 임명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 2.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 하여 수사 또는 감사 중인 경우
- 3.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 4.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 ② 공사 또는 공단 임직원의 임명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해당 임원에 대하여 직무를 정지하거나 그 임명권자

에게 직무를 정지할 것을 건의 · 요구할 수 있다.

- 제80조의4(징계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퇴직금 및 명예퇴직수당 등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수 있다.
 -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 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2.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 3.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국가공무원법」 제 79조에 따른 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 및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전에 임용된 임직원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징계에 따른 급여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4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국가공무원 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에 준하는 징계가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80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①
	공사 또는 공단 임직원의 임명
	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직원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
	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
	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
	로 기소 중인 경우
	2.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
	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
	중인 경우
	3.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4.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 등에
	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

<u><신 설></u>

는 조사 중인 경우

② 공사 또는 공단 임직원의 임명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의원 면직이 허용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임원에 대하여 직무를 정지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직무를 정지할 것을 건의・요구할 수 있다.

제80조의4(징계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사 또는 공단의 임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 및 명예퇴직수당 등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3.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국가공무원

 법」 제79조에 따른 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 및 명

 예퇴직수당 등의 지급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